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의 시설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2년)이 2013년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시공 및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재산 현황

- 1) 시설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 2) 위치 :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99(백현리)
- 3) 조성비 : 1,740억원 (국비 344, 도비 12, 시비 1,384)
- 4) 시설규모
 - 부지면적 : 411,456m²
 - 환경자원화시설 면적 : 324,400m²
 - 주민편의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면적 : 87,056m²
 - 건축면적 : 10,245.09m²
 - 연면적 : 17,769.8m²
 - 매립면적 : 68,276m²(1단계)
 - 매립용량 : 1,142,000m³
 - 소각용량 : 200톤/일(100톤/일×2기)
 - 재활용선별시설 : 50톤/일
 - 침출수처리시설 : 300톤/일

5)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명
관 리 동	사무실(5), 식당(1), 시청각실(1), 회의실(2) 등
소각시설동	중앙제어실(1), 반입장(1), 소각시설(2), 방지시설(2) 크레인실(1), 실험실(1) 등
재활용선별동	사무실(1), 휴게실(1), 재활용시설(1), 창고(1) 등
침출수처리동	사무실(1), 전기실(1), 침출수처리시설(1) 등
주민편익시설동	목욕탕(남,여탕), 사무실(2), 회의실(1), 헬스장(1), 건강증진실(1), 행사장(1) 등
기타시설	축구장(1), 테니스장(1), 배드민턴장(3), 농구장(1), 야외공연장(1), 정비동(1), 세차동(1), 대형폐기물처리장(1), EPR저장창고(1), 폐기물보관창고(1) 등

나. 위탁기간 : 2014년 ~ 2016년(3년)

다. 위탁운영비

(단위:백만원)

년도	계	고정비 (인건비 등)	변동비 (시설유지비 등)	비 고
계	22,322	14,913	7,409	
2014	7,544	4,971	2,573	고정비 전액지급 변동비 정산지급
2015	7,480	4,971	2,509	
2016	7,298	4,971	2,327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임

※ 산출기준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11.5. 환경부)

3. 참고사항(관련법령)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마.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재 산 현 황

구 분			건 물		토 지		비 고
			동 수	연면적(㎡)	필 지	면적(㎡)	
합 계			11	17,769.8	118	411,456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11	17,769.8	118	411,456	-환경자원화시설 송백로499외23필지 면적: 324,400㎡ 지역:계획관리지역 -주민편익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백현리 70-3외95필지 면적 : 87,056㎡ 지역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일반 재산	행정 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 시 설 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99(백현리)

□ 주 용 도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규모

- 부 지 면 적 : 411,456m²
- 환경자원화시설 면적 : 324,400m²
- 주민편익시설 및 백현체육공원 면적 : 87,056m²
- 건 축 면 적 : 10,245.09m²
- 연 면 적 : 17,769.8m²
- 매 립 면 적 : 68,276m²(1단계)
- 매 립 용 량 : 1,142,000m³
- 소 각 용 량 : 200톤/일(100톤/일×2기)
- 재활용선별시설 : 50톤/일
- 침출수처리시설 : 300톤/일
- 주 차 시 설 : 121면

□ 건축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알루미늄복합판넬

【관리동】

구분	연면적(m ²)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1,810.79		
지상1층	784.89	홍보관	식당, 대회의실, 전시실, 시민홍보교육실
지상2층	798.52	사무실	사무실(5), 소회의실, 창고(2), 휴게실
지상3층	227.38	사무실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소각시설동】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7,247.89		
지하1층	1,065.93	공조및기계실	폐기물저장조, 공정수저장조, 펌프실
지상1층	2,980.43	폐기물반입장	폐기물반입장, 스토카소각로
지상2층	1,607.17	중앙제어실	중앙제어실, 연소가스처리실, 실험실
지상3층	612.62	휴게실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 세탁실
지상4층	190.56	홀	홀, 복도
지상5층	796.58	크레인실	크레인조정실, 견학통로

【재활용시설동】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2,403.65		
지상1층	2,262.12	반입장	재활용품반입장, 선별장, 기계실, 휴게실,
지상2층	141.53	전기실	전기실, 사무실, 운영실

【주민편익시설동】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2,850.72		
지상1층	1,319.48	행사장	지역행사장, 전시실, 사무실, 목욕탕
지상2층	1,039.38	헬스장	헬스장, 사무실(2),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지상3층	491.86	건강증진실	건강증진실

【침출수처리동】

구분	연면적(㎡)	주요시설	사 용 용 도
계	2,073.81		
지하2층	251.50	환기실	송풍설비 및 기계실
지하1층	1,078.96	폐수처리실	폐수처리설비(침전조, 폭기조등)
지상1층	743.35	사무실	사무실, 전기실, 탈수설비

【기타시설】

시 설 명	연면적(m ²)	사 용 용 도
계	1,382.94	
정 비 동	259.05	정비실, 사무실
경 비 동	46.65	경비실, 숙직실, 샤워장
세 차 동	224.64	세차실, 기계실
폐기물보관창고	180	TV, 냉장고, 매트리스 보관
EPR저장창고	177.6	폐기물보관
대형 폐기물적치장	495	목재, 가구, 소파류 보관
굴 뚝	80m	면적 48.98m ²

□ 설비 및 부대시설 현황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기계설비	폐기물크레인(2), 페이로다, 16톤암롤차량, 5톤암롤차량, 대형폐기물 파쇄기, 철금속선별기, 3원선별기, 소각로(2), 버너(6), 소각로유압장치(2), 화격자열교환기, 폐열보일러(2), 증기복수기, 탈기, 반전식 반응탑(2), 여과집진기(2), 선택적촉매반응탑(2), 증기식가스기열기(2), 증기터빈, 발전기, 압입송풍기(2), 유인송풍기(2), 채추출기(2), 바닥재금속 선별기, 비산재저장조, 생활용수양수펌프(2), 공정용냉각수펌프(2), 가성소다탱크(2), 염산탱크(2), 활성탄여과기(2), 양이온교환수지탑(2), 음이온교환수지탑(2), 공기압축기(3), 악취배기송풍기, 냉각탑 열교환기, 파분기, 트롬웰, 발리스틱, 마그네틱선별기, 알미늄선별기, 광선별기(4), 진동피더, 압축기(4), 분쇄기(3), 감용기(1), 유해가스흡착기, 포크레인, 콤팩트, 집게차, 탈수기(2), 스키로다, 전동지게차 등	

구 분	시 설 물 내 역		비 고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비상발전기, 전력시스템, 실내조명시설, 옥외보안등설비 등		
실험설비	쓰레기분석설비1식, 소각재열작감량분석기1식, 연소가스분석기, 폐수분석기1식, 굴뚝자동측정기기(2)		
통신설비	CCTV(28), 구내통신선로, 구내유선방송설비 등		
소방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방송설비	홍보실	음향장비1식, 영상장비1식	
	전관방송	음향장비1식	
	주민편익 시 설 동	음향장비2식, 영상장비1식	
부대시설	조 경	소나무 외 7종(교목2주, 332주, 관목37,650주), 초화류 17,405본, 잔디 39,119㎡, 파고라 8, 평의자 43, 등의자 25, 사각정자 7 등	
	체육시설	테니스코트, 인조잔디축구장, 농구대, 배드민턴대(8), 러닝머신(6), 벤치프레스 등 24종(25), 전동안마의자(3), 두타베드 등 9종(16)	
	주 차 장	121면 [트럭 18, 대형차 6, 버스 2, 승용차 91(장애인 4 포함)], 자전거보관소 5	
	국기계양대	2식	

□ 위탁기간 : 2014년 ~ 2016년(3년)

□ 위탁운영비

(단위:백만원)

년도	계	고정비 (인건비 등)	변동비 (시설유지비 등)	비 고
계	22,322	14,913	7,409	
2014	7,544	4,971	2,573	고정비 전액지급 변동비 정산지급
2015	7,480	4,971	2,509	
2016	7,298	4,971	2,327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 결과임

※ 산출기준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2011.5. 환경부)

□ 주요위탁사무

- 반입 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 소각로, 매립시설, 재활용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 소각 잔재물(바닥재, 비산재)의 계량 및 처리 관리
- 불연성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 수전 및 발전설비(증기터빈발전기)의 안전, 운전 및 유지관리
-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환경자원화시설 부지내 수목, 잔디 등 조경관리
- 주민편익시설, 백현체육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 환경자원화시설 홍보관 운영 및 견학자, 방문자에 대한 안내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관 련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 각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